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14(목)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87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 가. 2024년 3월 개관예정인 금천 에코·에너지센터(금하마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 나.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명칭	설치 장소	시설규모	개관시기(예정)	비고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금하로1다길 12 (독산동 1118-7)	연면적 478.95㎡ (대지면적 342.5㎡)	'24년 3월	

- 나. 위탁개요

-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2) 위탁내용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민협력사업 지원
 - 나.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 지원 및 관리
 - 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등
-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 4) 운영비 : 292백만원(구비)

4.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시설 개요 및 사무위탁
금천 에코·에너지센터는 2024년 4월 개관할 예정으로 시설은 금하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478.95㎡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구비 연 2억 9천2백만원임.
- 검토 의견
금천 에코·에너지센터의 지역 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6.7.18.>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본조신설 2020.7.17]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구의 책무)

-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는 학교·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